

2005. 11. 18.(금)

제118회 임시회의 제2차본회의

심사보고서

- 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9. 제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5. 11. 10.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1. 15.(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영복)

가. 제안사유

- 장락주공A 4단지가 신축되고 장락동 성우한솔A 단지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락주공A 4단지 1개통 10개반 신설
 - 성우한솔A단지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제3조 이통반획정 기준은 이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 다만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11개반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반은 20~30호로 구성한다.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

제천시 장락동 신축되는 주공4단지는 332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하면 2개동에 11~17개반으로 편성함이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아파트의 특성상 50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7개반 정도로 설치 할 수 있으므로 1개동에 10개반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은 조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면단위 지역은 다음차에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 답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면단위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? (김진학 위원)
- 수몰지역에 대한 어떤 특례조항을 뒤서라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(김진학 위원)

나. 답변요지 (자치행정과장 이영복)

-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받아서 이번 정기회 때 상정이 되겠습니다.
- 이번 정기회 때 다 상정이 되겠으며 한수면 것도 정기회 때 상정이 됩니다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